

# 경기 침체와 하도급 거래질서

본협회 조사부

최근 우리 경제는 새로운 시련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경영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침체국면은 결국 대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4천4백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실태를 조사(96.11.18)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요구(75.4%)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점은 제품의 수시발주(44.5%), 납품대금 지급기간의 장기화(40.7%), 납기단축 및 촉박(35.0%)등의 순이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납품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도급거래유형에 있어서도 모기업(위탁기업)에 대한 중간기업(수·위탁기업) 및 하청업체(수탁기업)의 의존비율이 전년의 57.6%에서 72.1%로 크게 늘어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품질이나 기술수준등의 열세와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수입품의 범람과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과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경제의 10% 경쟁력향상시책을 발표하였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러한 경쟁력 향상을 부품에 대한 협력업체의 납품대가

의 인하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어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최근 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수출업체인 경우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부품에 대한 납품가격인하를 동시에 향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최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동운명체이며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바로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속에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노임성 공사와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현금지급이라든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협력업체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 우수한 사례를 몇개 들어보기로 한다.

LG전자(주)는 1천만원 이하의 납품대금은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대금도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자동으로 이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 사업운영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여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그동안은 5백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했던것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어음지급기일도 하도급법상의 법정기일인 60일 이내로 준수하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0일에서 15일씩 어음지급기일을 단축하여 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95년 11월부터 자사브랜드 총

61개 업체에 대해 제조하도급 대금을 어음지급에서 월1회 정기적인 현금지급으로 개선하였다. 협력업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펌-뱅킹(Firm-Banking) 시스템을 도입, 물품대금을 6개 시중은행으로 온라인 입금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안정적이며 신속한 대금지급을 보장해 주고 있다.

(주)미원은 중소기업지원방안의 일환으로 96년부터 구매대금의 현금결제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전액현금지급 대상의 범위도 인건비 비중이 큰 용역, 용차비, 상·하차비와 영세한 개별화물업체, 벌크운반비, 기자재 납품업체 및 현금거래 비중이 큰 곡류, 축산, 수산물의 구매대금까지로 확대하였다.

현대산업개발(주)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소기업 자재납품은 15일 이내에 노임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선급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용건설(주)은 하도급대금지급기간을 45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노임성 공사 및 우수업체에게는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극동건설(주)은 공사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하여 발주처의 기성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매월1회 하도급기성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설계변동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작업을 지시하여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대가를 지급해주고 있다. 특히 극동건설(주)은 협력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해 이행보증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진건설(주)의 경우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고 기성금은 60일 이내, 선급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법정 지급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95년 7월부터는 하도급대금 지

급기준을 개선하여 현금과 어음 비율이 20:80이던 것을 50:50으로 개선하고 어음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1천만원 이하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의 경우 기성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시설 및 장비구입자금으로 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2년 계약액의 130%내에서 우수협력업체에게 물량예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항공산업(주)은 95년 8월부터 협력업체의 자금부담 해소를 위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던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목적물을 10일단위로 월3회 마감하고 각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관(주)도 납품대금은 300만원까지는 현금결제를 해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주)은 하도급대금인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35일 어음,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0일 어음으로 지급하던 것을 96년 2월부터 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납품부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비개선비,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 환경보존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영난, 연쇄부도 등을 막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원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대금의 적기 공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정착시킬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경쟁질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공고해 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법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1. 목적</p> <p>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표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3. 적용범위</p> <p>이 지침은 법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등에서 규정된 범위반사실의 공표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p> <p>4가</p> <p>(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범위반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에 공표토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범위반정도, 과거 범위반횟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신문 및 사업장에 공표토록 할 수 있으며 범위반사실의 조속한 공표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 공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나(1)</p> <p>①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당해 사건의 신고일 또는 직권인지일의 전일로부터(이하 “최근”이라 한다) 1년간 피심인이 사업활</p>	<p>1. ....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p> <p>3. ....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하도급법 제25조 등에서 .....</p> <p>4가</p> <p>(1) ..... 위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p> <p>4가(3) 위원회는 피심인이 범위반사실의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협의함에 있어서 문서로 협의토록 한다.</p> <p>4나(1)</p> <p>① ..... 1) .....</p>

현 행	개 정(안)
<p>동과 관련하여 중앙일간지에 광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해 중앙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전판)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p>	<p>..... ..... ..... 하되, 광고횟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게재토록 한다. 다만, .....</p>
<p>〈신 설〉</p>	<p>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토록 할 수 있다.</p>
<p>〈신 설〉</p>	<p>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에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보고할 수 있다.</p>
<p>4-나(1) ②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한다.</p>	<p>4-나(1) ② ..... ..... 1) ..... 하되, 전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p>
<p>〈신 설〉</p>	<p>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전 제①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p>
<p>4-나 (3) 게재면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으로 최근 3년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이하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라 한다)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p>	<p>4-나 (3) ..... ① ..... .....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경고의 경우는 2회를 법위반횟수 1회로 본다)를 받은 횟수(이하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라 한다)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횟수와 하도급법 위반횟수는 따로 계산한다.(이하 같다)</p>

현 행	개 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나-(4) 공표문안 및 활자 크기</p> <p>① 공표제목에는 <u>법위반사업자</u> 및 <u>법위반 유형</u>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p> <p>〈예시〉</p> <p>· (주)○○는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p> <p>② 공표내용에는 <u>당해 법위반사실</u>과 <u>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u>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나</p> <p>(5) 공표크기 및 매체수</p> <p>위원회는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위반의 경중, 법위반의 상습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① 공표크기는 <u>법위반유형에 따라 4종류(3단×10cm, 4단×15cm, 4단×18.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u> 다만, 경쟁저해성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오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37cm까지 할 수 있다.</p> <p>②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u>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u>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광고한 광고매체수 및 게재횟수를 각각 기준의 3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② <u>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면 또는 3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u></p> <p>4-나(4) .....</p> <p>① 공표제목에는 <u>법위반사업자(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명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병기)</u> 및 <u>법위반유형</u>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p> <p>〈예시〉</p> <p>· (주)○○(△△백화점)는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p> <p>② ..... <u>당해 법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셔야 하고</u> .....</p> <p>4-나</p> <p>(5) .....</p> <p>.....</p> <p>.....</p> <p>.....</p> <p>① <u>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에 따라 4종류(3단×10cm, 4단×15cm, 4단×18.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u> .....</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범위반유형	공표크기	최근 3년간 범위반횟수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li> <li>· 부당한 공동행위</li> <li>· 계열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li> <li>· 재판매가격유지행위</li> </ul>	5단×18.5cm ~ 3단×1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하</li> <li>· 3~4회</li> <li>· 5~6회</li> <li>· 7회 이상</li> </ul>	3단×10cm	1개	1회
	4단×15cm ~ 3단×10cm		4단×15cm	2개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li> <li>· 경쟁사업자배제행위</li> <li>· 우월적지위남용행위</li> <li>· 사업자단체금지행위</li> </ul>	3단×10cm	*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현행기준임	3단×10cm	3개	1회
			3단×10cm	4개	1회
· 기타 범위반행위	3단×10cm				
<p>4-나 (6) 이행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피심인이 <u>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u>에 당해 범위반사실 등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제출토록 한다.</p> <p>4-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① 위원회는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게시 또는 입간판 등의 형태로 공표토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토록 한다.</p> <p>4-다(4) ③ 위원회는 피심인이 <u>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u>에 사업장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지침은 <u>1996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4-나 (6) ..... ..... <u>신문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u>에 ..... .....</p> <p>4-다 (4) ..... ① ..... <u>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u> ..... .....</p> <p>4-다(4) ③ ..... <u>사업장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u>에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지침은 <u>1996년 12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안)
<p>〈별지〉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p> <p>1. 개별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공표문안 (주)○○는 ○○, ○○을 한 사실이 있음</p> <p>저희 회사(○○협회)는 ○○,○○행위(등)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총○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p> <p>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p> <p>199○년 ○ 월 ○ 일 대표(이사) ○ ○ ○</p> <p>2.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연명 공표문안</p> <p>(주)○○는 ○개 사업자는 ○○을 한 사실이 있음</p> <p>저희 ○개 ○○들은 ○○을 공동으로 합의(또는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p> <p>최근 3년간 ×사는 ○회, △사는 ○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p> <p>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p> <p>199○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p>	<p>〈별지〉 .....</p> <p>1. 표준공표문안 (주)○○(△△백화점)는 ○○, ○○을 한 사실이 있음</p> <p>저희 회사(△△백화점, ○○협회)는 ○○기간 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방식으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총○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p> <p>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p> <p>2. 〈삭 제〉</p>

현 행	개 정(안)
<p>3. 활자(또는 글자)크기            사업장공표            전지크기(78.8cm×109cm)            공표제목 : 4.5cm×7.0cm 이상            공표내용 : 3.5cm×5.4cm 이상            공 표 자 : 4.0cm×6.2cm 이상</p>	<p>2. ....            .....            .....            공표제목 : 3.0cm×4.5cm 이상            공표내용 : 2.5cm×3.5cm 이상            공 표 자 : 3.0cm×4.5cm 이상</p>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신 설〉</p> <p><b>제13조(심사의견서의 제출)</b> ① 심사관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건심사착수보고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심사의견서를 심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심사관이 심사를 마친 후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고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p>	<p><b>제4조(심사절차의 개시)</b></p> <p>⑥ 심사관은 재신고사건의 처리이후 재신고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고 그 신고의 내용에 제38조(재심사의 명령)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란에 “재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p> <p>⑦ 심사관은 신고인이 제38조(재심사의 명령)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없이 3회이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p> <p><b>제13조(심사의견서의 제출)</b> ① 심사관은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심사의견서를 심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심사관이 심사를 마친 후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고 및 재재신고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가 명백하다</p>



현 행	개 정(안)
<p>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사건의 단서 2. 심사경위 3. 사건의 개요 4. 사실의 인정 및 적용법조 5. 심사관의 의견</p> <p>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13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p> <p>③ 제1항 제4호는 각하 또는 무혐의조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제13조의 2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p> <p>④ 제1항 제5호는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의견과 그 조치이유를 기재한다.</p> <p><b>제13조의2(심사보고서의 제출)</b> ① 심사관은 심사조정위원회가 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p> <p><b>제14조(각하 등의 절차)</b> 심사관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조정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에 따라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조치를 취한다. 다만, 심사관은 심사</p>	<p>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사건의 단서 2. 사건의 개요 3.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4. 조치의견</p> <p>② 제1항 제1호의 사건의 단서에는 사건에 대한 인지 또는 신고내용을 기재한다</p> <p>③ 제1항 제2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피신고인의 행위사실 등 사건의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한다.</p> <p>④ 제1항 제3호의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에는 법위반사실을 법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고 적용법조를 기재한다.</p> <p>⑤ 제1항 제4호의 조치의견에는 당해사건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재한다.</p> <p><b>제13조의2(심사보고서의 제출)</b> ① 심사관은 심사조정위원회가 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한 사건 및 <u>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u>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p> <p><b>제14조(각하 등의 절차)</b> 심사관은 제4조 제4항, 제5항 및 <u>제6항</u>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조정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에 따라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조치를 취한다. 다만, 심사관은</p>

현행	개정(안)
<p>를 마친 후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를 할 수 있다.</p> <p><b>제4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b>            ② 제1항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각기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행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신 설〉</p> <p style="padding-left: 40px;">〈신 설〉</p> <p><b>제44조(위반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b>            ① 위반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소송수행은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p>	<p>심사를 마친 후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를 할 수 있다.</p> <p><b>제4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b>            ② 제1항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각기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행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7.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조사중지를 한 경우</p> <p><b>제43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b>            ③ <u>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후 당해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조치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기각일 경우에는 당초 당해사건을 심사관이 행하고, 전부 또는 일부인용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u></p> <p><b>제44조(위반사건에 대한 소송수행)</b>            ① 위반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소송수행은 <u>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기각일 경우에는 당초 당해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하고, 전부 또는 일부인용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u></p>